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구기관 감사 전담조직의 설치〉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45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14.
3. 회 부 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법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일부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였는데, 이는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감사의 공정성·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반면, 현행법은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체계의 일관성 저해 및 연구기관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바, 국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제6항 삭제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 ④ (생략)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11조(원장과 그 직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③ (생략)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 -----.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원장----- -----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외부감사) <신설>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현행	개정안
<신설>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신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생략)	④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21조(사업) ----- ----- -----. 1. ~ 5. (생략) 6. <u>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u>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24조(이사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생략) 2. 연구기관의 <u>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u> 3.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③ ~ ⑥ (생략)	제2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원장</u> ----- ----- 3. ~ 7. (현행과 같음) 8. <u>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 -----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2. 제16조제4항-----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연법”이라 함)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임원으로서 임기가 각각 3년인 원장 1명과 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이 중 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8조의2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되 구체적인 임명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²⁾

1)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② 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3조에서는 연구기관의 감사는 ‘해당 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및 해당 연구기관이 추천한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³⁾

□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회 포함 25개 기관(부설연구기관 제외)에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감사는 24명임.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감사 현황>

기관명	감사	임명일	임기종료일
연구회	한경필	2024. 12. 13.	2027. 12. 12.
건축공간연구원	천명환	2020. 11. 20.	2023. 11. 19.(임기계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영재	2024. 11. 21.	2027. 11. 20.
국토연구원	김정훈	2023. 9. 21.	2026. 9.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승관	2024. 11. 21.	2027. 11. 20.
산업연구원	박홍서	2024. 12. 19.	2027. 12. 18.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원일	2023. 4. 27.	2026. 4. 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성엽	2022. 12. 1.	2025. 11. 30.
통일연구원	정준희	2023. 11. 16.	2026. 11. 15.
한국개발연구원	김한석	2023. 4. 27.	2026. 4. 26.
한국교육개발원	민용식	2024. 11. 21.	2027. 11.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충연	2024. 12. 19.	2027. 12. 18.
한국교통연구원	김지현	2021. 6. 14.	2024. 6. 13.(임기계속)
한국노동연구원	엄상민	2023. 2. 13.	2026. 2. 12.(임기계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은숙	2021. 2. 1.	2024. 1. 31.(임기계속)

② 감사의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3) 제43조(연구기관 감사의 선임) ① 연구기관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1. 해당 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기관
2. 연구회 및 해당 연구기관이 추천한 관련 단체

②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임감사 선임의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원장선임 절차를 준용한다.

기관명	감사	임명일	임기종료일
한국법제연구원	백경미	2021. 2. 22.	2024. 2. 21.(임기계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연심	2021. 7. 12.	2024. 7. 11.(임기계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미	2020. 9. 25.	2023. 9. 24.(임기계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진국	2024. 11. 21.	2027. 11. 2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종식	2024. 11. 21.	2027. 11.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성춘	2021. 5. 3.	2024. 5. 2.(임기계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홍철	2024. 11. 21.	2027. 11. 20.
한국행정연구원	공석(2024. 10. 4. 임기종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지봉	2022. 2. 28.	2025. 2. 27.(임기계속)
한국환경연구원	정복영	2024. 12. 19.	2027. 12. 18.

주: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8개 기관의 감사는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정관에 따라 후임자의 임명 전까지 계속하여 근무 중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연법”이라 함)은 연구기관마다 감사(監事)를 두지 않고 연구회에만 감사위원회를 두어 감사(監査)를 실시하고 있음.⁴⁾

－ 과거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정부출연연법에 따른 연구기관들처럼 개별적으로 감사(監事)를 두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이와 같은 정책 변경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임.

4) 단, 개별 연구기관은 5명 내외로 구성된 감사조직을 두고 있음.

- 첫째,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몰입 환경의 조성임.

즉, 종전의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할 경우 적극적인 면책을 통해 연구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예방 감사 중심의 감사인력 운용과 함께, 감사원·연구회·기관 등 3단계 감사로 인한 연구자의 수감 피로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

- 둘째, 감사의 공정성 제고임.

연구기관 자체감사는 구성원 간 유대관계나 업무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감사가 어렵고 감사기법 도입 등을 통한 성과 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셋째, 감사의 독립성과 자원의 효율성 추구임.

개별 연구기관에 소속된 감사와 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감사 인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독립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연구회에 통합감사를 두어 각 연구기관에 분산된 감사 인력과 이에 소요되는 자원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처럼 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를 통합하려는 것임.

- 우선, 안 제11조와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별 연구기관의 임원 중 하나인 감사(監事)를 폐지하고, 안 제16조와 제21조 및 제31조를

통하여 연구회에 감사(監査)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두면서 자체감사 기능을 해당 전담조직에서 실시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6조제1항은 연구회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⁵⁾ 실시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자체감사의 일부를 개별연구기관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되,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면서 수행계획과 그 결과를 연구회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개정안 제16조제5항은 정부가 연구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기출연연법 제16조⁶⁾에 따라 연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동 감사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권고, 감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처리, 감사관련 제도 및 규정 관리, 고충민원 신고접수 및 조사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⁷⁾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임기 3년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음.⁸⁾
- 아울러, 과기출연연법 시행령 제12조의3⁹⁾은 과기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미 자체감사로 실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감사를 금지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¹⁰⁾의 규정을 차용한 것임.

7) 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단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들어 이사장이 정한다.

8) 2026년 2월 말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위원장 포함 3명, 실무 인력은 정규직 및 계약직 인력 등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9) 제12조의3(외부감사의 부담경감) 정부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에 대해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연구회가 연구기관에 대해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자체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0)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연구회 역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유사한 합의제 위원회를 전담조직의 형태로 운영하고, 대통령령의 규정도 과기출연연법 시행령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됨.

- 즉, 연구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의 감사위원과 23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감사위원회는 소관 연구기관 전체를 대상(각 연구기관별 3~5년 주기)으로 하는 정기감사(통합감사), 비위 의혹이나 국회 등 감독관청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특정감사, 그 밖의 사전컨설팅이나 예방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아울러, 개정안 제16조제2항과 제3항을 통해 연구회의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복무감사 등의 실시 권한을 개별 연구기관의 감사조직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기능의 위임·분산도 추구함.

□ 개정안은 현재 각 연구기관마다 매년 실시되는 자체감사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킴으로써 연구몰입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감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므로 기관 내 행정인력의 순환보직을 통해 충원되는 현행 감사인력에 제기되는 전문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각 연구기관장으로부터 독립된 인력이 감사를 실시하므로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온정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긍정적 요인이 있음.

- 우리 위원회는 2024년 회계연도 국무총리실 소관 결산 검토보고와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연구회에 소관 연구기관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통합감사조직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1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개별 연구조직의 감사조직과 감사인력은 여전히 존속하게 되는데,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등

에게 자체감사기구를 두도록 한 점¹¹⁾을 고려한 조치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감사조직도 모두 연구회의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025년부터 개별 연구기관의 감사인력을 모두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객관성 측면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으므로 오히려 선제적으로 개별 연구기관의 감사인력을 연구회의 감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출범시키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¹²⁾

□ 아울러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위원회가 그 기능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상당수를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아 충원하고 있어 감사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¹³⁾이 있으므로 연구회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모델을 따라 개별 연구기관으로부터 감사인력의 파견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11)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12)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가 필요함.

첫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적용제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해당 규정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에 자체감사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용 범위에 예외를 두고 있는 같은 법 제3조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별 연구기관과의 협의와 소통이 필요함. 대부분의 개별 연구기관은 감사 인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13)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월 14일)

문 의 처
02)6788-5109